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철도건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철도사업”이란 「철도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사업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6. “선로”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7.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2. “철도사업자”란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노선에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수탁자”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4. “철도기반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과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말한다.
15. “철도운영시설”이란 철도기반시설 외에 역사, 정비시설, 물류시설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6. “인계인수”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 또는 수탁자(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 “개통인계인수”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통예정일 전에 실시하는 인계인수를 말한다
18. “최종인계인수”란 기존에 개통인계인수한 부분을 포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분야별 단위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 해당 분야별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인계인수를 말한다.
19. “전차선로”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20.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말한다.
21. “시설물검증시험”이란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

인·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영업시운전”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3. “사용개시”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차량의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5. “신호설비”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mote Control)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신호 시설을 말한다.

26.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영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나. 보수 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7.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로 기타 철도정보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8. “기지”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차량기지·주박(駐泊)기지·보수기지 및 궤도기지를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4조(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의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설계 시행)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시행 이전에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설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 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시설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을 설계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 시행 시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가급적 병행 시행하여 필요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을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노선선정

2. 정거장(차량기지 포함) 위치선정 및 규모산정
3. 열차운영계획 및 정거장 배선계획
4.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5. 궤도구조(궤도분야)
6. 전차선로 가선방식의 시스템(전기분야)
7. 신호·제어시스템 및 연동도표(신호분야)
8. 전력수급계통도 및 전차선급전계통도(전기분야)
9. 통신망 구성도(통신분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설계 시행방안 마련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착수 후 세부 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전에 비교노선안, 정거장, 교량, 터널 등 주요구조물 계획, 설계속도, 열차운영 계획 및 추정공사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최적안 선정사유 등을 첨부한 기본설계 시행방안(이하 “설계시행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시행방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설계시행방안 마련시는 전체 노선계획을 1/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주변지형 및 지장물 현황을 1/5,000~1/10,000 지형도에 상세히 표시하여 비교대안에 대한 도상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행방안의 주요사항 또는 추정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 15%

이상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자문회의 개최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철도사업자등이 지정하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를 2인 이상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대상 자문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1인으로 한다.

③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의 참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이용자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보고한 후 「철도건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변경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총사업비의 관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 완료 시 이전 단계와 사업규모가 상이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설계 결과보고)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시행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제6

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사업자 등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설계시행방안 마련, 설계자문회의 개최, 기본계획의 변경, 총사업비 관리, 열차운영계획의 변경 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도서 등을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고 필요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역사 실시설계에 있어서 철도사업자등은 역사 내 고객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 서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소방, 상하수, 전기, 냉난방 배관, 덕트, 도시가스 등의 건축설비 위치를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설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건축설비 설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때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철도사업자등이 역사 실시설계 시 협의 완료된 상업시설 이외 판매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역사콘코스, 대합실 등 이용객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⑦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설계 결과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서류는 제1호 서류에 한한다

1. 실시설계(통합) 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2.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및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
4. 실시설계에 반영된 교통영향분석대책,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제14조(실시계획 승인 요청)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요청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지의 계획 및 설계)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를 하여

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지건설방안
2. 기지운영계획
3. 차량소요 및 시설규모 산정
4. 부지 후보지 검토 및 위치확정
5.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인허가
6. 검수설비, 토목, 궤도,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시설계획
7.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기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기지 운영비 소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차량 안전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기지 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철도사업자등과 설계시행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제16조(공사계약 및 착공)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 검토 등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착공행사계획을 포함한 착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을 위해 용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를 일정부분 확보한 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여 착공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신규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차액 감액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턴키공사 등의 추진)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턴키공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턴키공사 발주 전(입찰공고일 30일 전)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2. 터키공사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

3. 터키공사,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 후 45일 이내에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 자료

제18조(착공설명회 개최)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건설공사 착공 시에는 철도사업자등과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공정 통보)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철도사업자등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 등 총사업비 관리)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연도 완공예정이거나 정부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공사 중간점검)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궤도·건

축·전기·신호·통신·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
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화장실·수유실 등 규모 적정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
3. 궤도·전기·신호·통신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
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라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를 통

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 이행절차 등

제21조(차량구매계획 수립 등)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차량의 형식과 종류, 제작사의 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차량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개통에 대비하여 한다.

제22조(소요인력 협의) ①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의 개통과 관련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소요인력 및 조직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 전년도 6월까지 소요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충원인원에 대하여는 개통 3개월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개통 후 영업에 필요한 인력배치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차량 인수계획 및 열차운영계획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년도 2월까지 개통사업의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개통사업 운용예산 확보) 철도사업자등은 건설공사 개통에 대

비하여 개통 전년도 5월까지 유지보수인력 및 운용인력, 보수용품, 영업운영비품, 응급복구용 자재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공정 보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사업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 8개월 전에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를 작성,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인수운영전담반 구성·운영)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개통 6개월 전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수운영전담반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반장으로 하고, 시설점검팀과 운영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분야 마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점검팀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점검팀은 철도사업자등을 팀장으로 하며, 팀원은 분야별(노반,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력, 전차선, 송변전, 차량, 영업, 운전, 안전 등) 각 2인(철도건설사업시행자 1인, 철도사업자등 1인)으로 구성한다.

⑥ 인수운영전담반은 개통사업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
3.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계인수
4. 개통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역사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6. 기타 개통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업무

⑦ 인수운영전담반장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간 이견 발생 시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결이 곤란한 경우 처리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동점검) ① 제25조의2에 의한 인수운영전담반장은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노선이 타 기관과 연계노선(도시철도

등)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시설물사용 계획을 합동점검 전에 미리 철도사업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동점검 전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요원 교육계획
2. 열차운영계획
3. 차량인수점검 및 차량성능시험 계획(개통에 따라 차량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기타 개통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다이나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1. 역간 거리표
2. 선로평면도(축척 = 1:1,000)
3. 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
4. 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
5. 각 역 연동도표
6. 선로건조물 위치표
7. 곡선표
8. 구배표
9. 건물도, 설비도 (일반도)

10.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

11. 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제5장 공사 중 사용개시 절차

제28조(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 구성·협의 등) ①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행되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서 및 계획 등을 수립·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
2.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 및 시설물검증 시험 시행절차
3.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서행속도 및 서행해제 등 관련사항
4.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행선 변경구간 정상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 및 이행절차 등
5.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의 사용개시 일

정 및 인계인수절차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로차단작업 세부 시행절차

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선 구간 완공)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시험을 위하여 시험선구간이 필요한 경우 차량인수시험에 필요한 선로 일부구간(시험선구간)을 개통 6개월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 일부구간 및 철도운영시설 등의 개통전 사용개시)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개통 후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 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부설한 임시선로에 대하여 미리 철도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운영을 위하여 영업운전이 필요한 선로구간(이하 “**운행선 변경구간**”이라 한다)을 철도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및 기간을 확정된 후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계획서를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차단작업과 함께 철도사업자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와 전차선로 및 신호설비 등의 공사를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열차**운행선**이 변경되어 사용개시 되어야 하는 개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소에 한하여 공사완료 시기를 사용개시 직전으로 할 수

있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합동점검 후 다음사항을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의 철도시설 점검결과 보완사항

나. 시설물검증시험 여부

다. 사용개시 예정일자

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설물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변경구간의 사용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운행선변경구간 합동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반, 궤도, 신호, 전기, 설비, 차량 등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공사책임자 및 책임감리원 입회

나. 점검결과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완 요구사항 조치

6.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5호 나목의 보완사항이 사용개시 예정일 이내에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행선 변경구간 사용개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선 변경구간에서는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별표1에 따라 단계별로 열차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단계별 속도상승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로 안정화 작업 등을 시행한 구간은 서행구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8. 철도사업자등은 운행선 변경구간 선로사용개시 이후(최초의 정기열차가 통과한 이후)에는 별표1과 같이 단계적으로 속도를 상승하여야 하며, 여건상 단계별 속도상승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 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속도 상승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운행선 변경구간에서 열차가 정상속도에 도달하여 운행할 때까지 선로 등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 하여야 하며, 정상속도 이후에는 철도사업자등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철도사업자등이 미리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부터는 철도사업자등이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사용개시일을 미리 결정한 후 사용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개시 예정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개통 전에 장래본선이 아닌 임시선로를 사용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개시를 할 수 있다.

1. 역간 계획노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2. 정거장 구내 계획배선으로 선로 등 시설물이 최종 완료된 경우
3. 역무시설 등 철도운영시설이 최종 완료된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차단 등 공사협의)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장을 주는 철도시설의 구간을 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 중지(이하 “차단”이라 한다)시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작업시작일 14일 전에 차단작업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등은 작업시작일 5일 전에 차단작업 시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유포함)

2. 차단 구간 및 기간

3. 공사책임자 및 안전관리대책

4. 선로 종·평면도(철도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지도 포함)

5. 단계별 시공상세도

6. 기타 철도사업자(수탁자)가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철도사업자등은 차단작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하여 차단작업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향후 대책 등 회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차량인수 등 영업개시절차

제32조(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철도사업자등이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3조(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 등) ①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철도사업자등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통 3개월 전에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복구용 자재, 보수용품 및 운영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철도종합시험) 영업개시에 대비하여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개통계획 수립 등)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9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시기, 개통일정 등이 포함된 개통계획을 수립하여 개통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개통행사계획 수립)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개통 30일 전에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통행사는 가급적 간소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용인력 등 투입)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 30일 전까지 유지보수용품, 공구류 배치, 영업설비 투입 및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상호 협의하여 신규시스템 및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개시안 작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결과와 개통계획에 따라 개통 20일 전(신규노선의 경우 30일 전)까지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영업개시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영업개시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영업개시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운송개시) 철도사업자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일에 맞추어 운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① 철도사업자등은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개통 후 90일 이내에 철도시설의 보완사항 등 철도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을 철도사업자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물에 한하여 완공 및 인계인수 일정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완공된 철도시설의 인계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관련자료등을 인수하여야 하며, 열차의 안전운행과 관련 없는 하자 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 등이 발생하더라도 유지보수 시행을 위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시설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철도사업자등에게 개통 예정일 전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통인계인수 완료하고 그 결과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후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을 최종 준공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최종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6개월 이내 철도시설물의 준공이 어려울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준공도면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사업자등이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하며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철도사업자등은 인계인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준공 및 하자관리 등

제43조(준공확인)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2개월 전에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일부구간이 준공되어 개통하고자 할 경우에

는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하자보수 및 관리) ① 철도시설의 하자보수 및 관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자의 3회 이상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의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제1호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하자처리를 3개월 이상 미이행한 경우
3. 기타 철도시설관리자가 하자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하자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반기별 하자현황과 조치계획을 해당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지연하자의 지연사유와 만회대책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인력파견)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등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호 인력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목적, 인원, 기간 등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 본 지침은 영업선 내에 있는 신설 역 또는 개량 역 사용개시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은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통계획 수립이후 사업특성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계별 상승속도(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관련)

단계별	열차속도	시행시기	점검기준	비고
1단계	20km/h	최초 개통 열차에 한하여 이후 통과열차는 40km/h	궤도정비 기준 이내	
2단계	60km/h	1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3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3단계	80km/h	2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6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4단계	100km/h	3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8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5단계	정상속도	4단계 개통 후 3일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1,0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 기준 이내	

[별표 2] 시설물 인계인수 목록(제42조제2항 관련)

- 인계인수 목록은 사업의 내용 및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1. 노반분야(38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 각종 대장	1. 구조물 현황(파정표 및 수준표)	○	○	○		
	2. 교량카드(이력카드)	○	○	○		
	3. 터널카드(이력카드)	○	○	○		
	4. 입체교차시설카드(이력카드)	○	○	○		
	5. 방음벽카드	○	○	○		
	6. 구교카드(하수포함)	○	○	○		
	7. 옹벽카드	○	○	○		
	8. 울타리 설치 현황	○	○	○		
	9. 급경사지 현황(사면대장)	○	○	○		
2. 각종 보고서	1. 최종감리보고서(감리업무일지포함)	○			○	
	2. 성공실패사례보고서	○			○	
	3. 실시설계보고서	○	○	○		
	4.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	○		○	
	5.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		○	
	6. 지질조사보고서	○	○		○	
	7. 초기점검보고서	○	○	○		
	8. 교량재하시험보고서	○	○	○		
	9. 사전재해영향평가보고서	○	○		○	
	10. 공사중 시행한 용역보고서	○	○		○	
3. 품질시험계획서	1. 품질시험계획서	○			○	
4. 각종 검측서	1. 각종 검측서	○			○	
5. 각종 계산서	1. 계산서(강재)	○			○	
	2. 계산서(구조)	○			○	
	3. 계산서(기전설비)	○			○	
	4. 계산서(수리)	○			○	
	5. 계산서(수문)	○			○	
	6. 계산서(용량)	○			○	
	7. 계산서(기타)	○			○	
6. 공사작업일지	1. 공사작업일지	○			○	
7.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1.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		○	
8. 기술자문사항	1. 기술자문사항	○	○		○	
9. 민원처리부	1. 민원처리부	○	○		○	
10 수위표설치현황 및 관측표	1. 수위 표설치현황 및 관측표	○			○	
1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			○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2. 시공기록비디오테이프	1. 시공기록비디오테이프	○			○	
13. 시공기록 사진첩	1. 시공기록 사진첩	○			○	
14. 시공절차서	1. 시공절차서	○			○	
15. 시험성적서	1. 강섬유혼입량 시험	○			○	
	2. 검교정관리대장	○			○	
	3. 공인기관의뢰 시험관리대장	○			○	
	4. 공장검사결과서	○			○	
	5. 굵은골재시험관리대장	○			○	
	6. 그라우팅 압축강도 시험대장	○			○	
	7. 두께측정 상부노반	○			○	
	8. 락볼트인발시험대장	○			○	
	9. 레미콘 공장점검결과	○			○	
	10.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			○	
	11. 리바운드시험대장	○			○	
	12. 방수슈트 AIR TEST	○			○	
	13. 분동시험관리대장	○			○	
	14. 서중콘크리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	
	15. 숏크리트 골재시험관리대장	○			○	
	16. 숏크리트 두께 시험대장	○			○	
	17. 숏크리트 배합설계	○			○	
	18. 숏크리트 시공품질관리대장	○			○	
	19. 숏크리트 압축강도대장	○			○	
	20. 숏크리트 휨강도 대장	○			○	
	21. 어프로치블럭 평판재하시험	○			○	
	22. 잔골재 시험관리대장	○			○	
	23. 커플러 인장시험	○			○	
	24. 콘크리트 압축강도	○			○	
	25. 콘크리트 타설실명대장	○			○	
	26. 터널시험대장	○			○	
	27. 토공실내시험	○			○	
	28. 평판재하시험 뒷채움	○			○	
	29. 평판재하시험 상부·하부노반	○			○	
	30. 품질시험관리대장	○			○	
16. 유지관리매뉴얼	1. 유지관리매뉴얼	○	○	○		
17. 인허가 서류	1. 인허가 서류	○	○		○	
	2. 지자체 인계인수 서류	○	○		○	
	3. 기부체납 자료	○	○		○	
18. 준공개소별수량집계표	1. 준공개소별수량집계표	○	○		○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9. 준공공사비 내역서	1. 준공공사비 내역서	○	○		○	
20. 측량성과물	1. 측량성과물	○	○	○		
	2. 유지관리기준점	○	○	○		
21. 각종시방서	1. 공사시방서	○	○		○	
	2. 특별시방서	○	○		○	
22.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1.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	
23. 하도급계약현황	1. 하도급계약현황	○			○	
24. 하자보증서	1. 하자보증서	○	○		○	
	2. 하자담보책임기간 현황표	○	○		○	
25.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		○	
	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등 관리대장	○	○		○	
26. 지장물도	1. 지장물도	○	○		○	
27. 선로평면도	1. 선로평면도	○	○	○		D개월
28. 선로종단면도	1. 선로종단면도	○	○	○		D개월
29. 정거장평면도	1. 정거장평면도	○	○	○		D개월
30. 선로건조물 위치표	1. 선로건조물 위치표	○	○	○		D개월
31. 종합배치도	1. 종합배치도	○	○		○	
32. 배선약도	1. 배선약도	○	○	○		D개월
33. 용지도	1. 용지도	○	○		○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	○	○		○	
35. 고정자산관리대장	1. 고정자산관리대장	○	○		○	
36. 각종점검 조치결과서	1. 각종점검 조치결과서	○	○		○	
37. 준공전 사용허가필증	1. 준공전 사용허가필증	○	○		○	
38. 계측기 대장 및 매뉴얼	1. 계측기 대장 및 매뉴얼	○	○	○		

2. 궤도분야(25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 각종대장	1. 궤도대장	○	○	○		D3개월
	2. 장대레일 설정 기록표	○	○	○		D3개월
	3. 분기기 이력카드	○	○	○		D3개월
	4. 역간거리표, 곡선표, 구배표, 파정표	○		○		D7개월
	5. 분기기 부설현황	○	○	○		D3개월
	6. 속도제한개소 현황	○	○	○		D3개월
	7. 콘크리트궤도 균열관리대장	○	○	○		D3개월
	8. 노반침하계측기록	○	○	○		
2. 궤도보수 이력카드	1. 레일연마보고서	○	○	○		D3개월
	2. 궤도보수 관리대장 (선형,침목,체결장치 등)	○	○	○		D3개월
3. 유지관리 매뉴얼	1. 유지관리 매뉴얼	○	○	○		D3개월
4. 하자보증서	1. 하자보증서(현황표 포함)	○	○	○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	○		○		
6. 실시설계보고서	1. 실시설계보고서	○	○	○		D3개월
7.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	○	○		○	
8.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			○	
	2. 시공절차서	○			○	
9. 선형계산서	1. 선형계산서	○	○	○		D3개월
10. 수량산출서	1. 수량산출서	○			○	
11. 공사작업일지	1. 공사작업일지	○			○	
12. 품질시험계획서	1. 품질시험계획서	○			○	
13. 자재공급승인서류	1.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			○	
	2. 지급자재수불부	○			○	
14. 최종감리보고서	1. 최종감리보고서(감리업무일지포함)	○			○	
15. 준공도면	1. 준공도면(정거장평면도포함)	○	○		○	
16.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	○			○	
17. 궤도검측결과보고서	1. 궤도검측결과보고서	○	○	○		D3개월
	2. 분기기 점검기록부	○	○	○		D3개월
	3. 다짐작업 기록표	○	○	○		D3개월
18. 용접시공기록표	1. 현장용접시공기록부	○			○	
19. 기술자문사항	1. 기술자문사항	○			○	
20. 시험성적서	1. 시험성적서	○			○	
21. 측량성과물	1. 측량성과물	○			○	
22. 하도급 계약현황	1. 하도급 계약현황	○			○	
23. 응급복구자재 목록	1. 응급복구자재 목록	○	○		○	D3개월
24. 콘크리트 타설현황	1. 콘크리트 타설현황	○			○	
25. 선로일람약도	1. 선로일람약도	○	○	○		D7개월

3. 건축분야(15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형태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최종	
01. 건물 준공도서	1. 실시설계보고서(도면포함)	○	○	○		D-7월
	2. 준공도면	○	○		○	
	3. 시방서, 수량산출서(집계표)	○	○		○	
	4. 구조계산서	○	○	○		
	5. 각종 예비품 목록	○	○	○		
02. 기계설비 준공도서	1. 실시설계 보고서(도면포함)	○	○	○		D-7월
	2. 준공도면	○	○		○	
	3. 시방서, 수량산출서(집계표)	○	○		○	
	4. 계산서(용량,부하산출서 등)	○	○	○		
	5. 각종 예비품 목록					
03. 소방설비 준공도서	1. 실시설계 보고서(도면포함)	○	○	○		D-7월 해당분야
	2. 전기,기계 소방 준공도	○	○	○		
	3. 시방서, 수량산출서(집계표)	○	○		○	
	4. 계산서(용량,부하산출서 등)	○	○		○	
	5. 각종 예비품 목록	○	○	○		
04. 각종 장비설비 준공도서	1. 승강기 준공도서(별책 등)	○	○	○		
	2. 공기조화기 및 환기설비	○	○	○		
	3. 각종 냉난방 설비 등	○	○	○		
	4. 자동제어 등 제어설비 등	○	○	○		
	5. 각종 예비품 목록	○	○	○		
05. 역사 구조물 준공도서	1. 구조물 준공도	○	○	○		해당분야
	2. 구조계산서	○	○		○	
	3. 지중매설물 지장물도	○	○		○	
06. 지반조사 보고서		○	○	-	○	
07. 용지도 및 배치도		○	○		○	해당분야
08. TAB 보고서		○	○		○	
09. 지진계측 준공도서	1. 건물 지진계측설비 준공도	○	○	○		
10. 각종 승인서 사본	1. 지자체 인,허가 사항	○	○	○		해당분야
	2. 각종 자재 시험성적서	○	○	○		
	3. 각종 자재공급 승인서류	○	○		○	
	4. 기타 지자체 협의사항	○	○		○	
11. 각종 유지관리 도서	1. 유지관리 매뉴얼 (각종 전기전자 회로도 및 계통도 포함)	○	○	○		
12. 하자보증서	하도계약 현황 포함	○	○	○		
13. 공사준공 사진첩		○	○		○	
14. 최종감리보고서	1. 최종감리보고서(감리업무일지포함)	○	○		○	
15. 시설관리전산입력자료	CD 제출	○	○		○	

4. 송변전설비분야(12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면인수형태		인면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01. 준공도서	1. 준공도서(도면, 수량조서 포함)	○	○	-	○	
02. 물품 제작 설명서	1. 물품 제작 설명서	○	○	○	-	
03. 사진첩	1. 지하매설물 및 주요공종 사진첩	○	○	-	○	
04. 명세표	1. 개소별 명세표	○	○	○	-	
05. 시험성적서	1. 각종 시험성적서 및 측정자료	○	○	○	-	
06. 지도	1. 송전선로 경과지도(지형도 포함)	○	○	-	○	
	2. 송전선로 수치지도 및 지적도	○	○	-	○	
07. 지침서	1. 유지보수 지침서	○	○	○	-	
08. 관련 증권	1. 물품 하자 및 시운전 이행보증증권(사본)	○	○	-	○	
09. 사용계약서	1. 전기사용 계약서	○	○	○	-	
10. 검사필증	1. 사용전 검사 필증	○	○	○	-	
11. 운용프로그램	1. 변전기기용 운용프로그램(OS)	○	○	-	○	
12. 시설물 기준정보	1. ERP시스템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 작성자료	○	-	○	-	

5. 전차선로분야(6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면인수형태		인면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 준공도서	1. 준공도서(평면도, 부속도, 장주도, 급전계통도 포함)	○	○	-	○	
2. 사진첩	1. 공사사진첩(매설시설물 및 특수설비, 급전케이블 접속)	○	○	○	-	
3. 개소별 명세표	1. 개소별 명세표	○	○	○	-	
4. 측정 기록표	1. 가공 전선 및 금구류 시공 기록표(절연이격거리)	○	○	○	-	
	2. 건널선장치 측정 기록표	○	○	○	-	
	3.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측정 기록표	○	○	○	-	
	4. 장력조정장치 시공 기록표	○	○	○	-	
	5. 전선류 시공 기록표	○	○	○	-	
	6. 전선압축 접속 기록표(개소별)	○	○	○	-	
	7. 전차선로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 활성진단시험 결과	○	○	○	-	
	8. 가공전차선 측정 기록표(높이,편위)	○	○	○	-	
	9. 과장력 인가표	○	○	○	-	
	10. 건널목높이제한 기록표	○	○	○	-	
	11. 전주방호책 시공 기록부	○	○	○	-	
	12. 이도측정 기록부	○	○	○	-	
	13. 구분장치(애지구분장치, 절연구분장치,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측정기록표	○	○	○	-	
5. 매뉴얼	1. 전차선로 유지보수 매뉴얼	○	○	-	○	
6. 시설물 기준정보	1. ERP시스템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 작성자료	○	-	○	-	

6. 전력설비분야(8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 준공도서	1. 준공도서(도면, 개소별 명세표)	○	○	-	○	
2. 성적서	1. 시험성적서	○	○	○	-	
3. 검사필증	1. 사용전검사 필증	○	○	○	-	
4. 측정 기록부	1. 접지저항 측정기록부	○	○	○	-	
	2. 절연저항 측정부	○	○	○	-	
	3. 절연내력 시험 기록부	○	○	○	-	
5. 사양서	1. 제작사양서	○	○	○	-	
6. 매뉴얼	1. 유지보수 매뉴얼(원격제어장치 및 전력설비 PC OS 포함)	○	○	○	-	
7. 계약서	1. 전기사용 계약서	○	○	○	-	
8. 시설물 기준정보	1. ERP시스템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점물 기준정보 작성자료	○	-	○	-	

7. 통신설비분야(11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형태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최종	
1. 준공도서	1. 준공도면	○	○	○		
	2. 설계서, 수량조서	○	○	○		
2. 공중별시험 점검표	1. 통신선로설비 점검표	○	○	○		
	2. 전송설비 점검표	○	○	○		
	3. 열차무선설비 점검표	○	○	○		
	4. 역무용통신설비 점검표	○	○	○		
	5. 역무자동화설비 점검표	○	○	○		
	6. 전원설비 점검표	○	○	○		
	7. 건축통신설비 점검표	○	○	○		
3. 사진첩	1. 공사사진첩	○	○	○		
4. 명세표	1. 개소별 명세표	○	○	○		
	2. 설비별 현황표	○	○	○		
	3. 시설물 IP 및 각종 선번장	○	○	○		
5. 매뉴얼	1. 유지보수 및 운용자 매뉴얼	○	○	○		
6. 사양서	1. 자재(제작)사양서	○	○	○		
7. 시험성적서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8. 시설관리전산입력자료	1. ERP시스템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 자료	○	○	○		
9. 인허가 서류	1. 무선국 허가증	○	○		○	
	2. 자기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필증	○	○		○	
10.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OS, 라이선스 포함)	○	○		○	
	2. 시설물 설정파일	○	○		○	
11. 기타(역무자동화)	1. 모듈(PCB)별 상세 전자회로도·부품 배치도·상세기계 도면	○	○		○	
	2. Application(protocol 포함) Source List, Code(주석포함)	○	○		○	
	3. 각 레벨간 전송 Data Format 내용, 프로그램 과정 흐름도	○	○		○	
	4. 해당 Compiler 및 Assembler 일체 (하드웨어 포함)	○	○		○	

8. 신호설비분야(15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형태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최종	
01. 준공도면	1. 관구도	○	○	○		
	2. 연동도표	○	○	○		
	3. 궤도회로도(귀선회로도포함)	○	○	○		
	4. 폐색 주파수카드 배열도(실장도)	○	○	○		
	5. 전선로도	○	○	○		
	6. 전원계통도	○	○	○		
	7. 시스템 구성도	○	○	○		
	8. 연동장치 결선도	○	○	○		
	9. 폐색장치 결선도	○	○	○		
	10. 건널목 결선도	○	○	○		
	11. 안전설비 결선도	○	○	○		
02. 검사표	1. 연동장치 조건검사표	○	○	○		
	2. 건널목 조건검사표	○	○	○		
	3. 터널경보장치 조건검사표	○	○	○		
	4. 지장물경보장치 조건검사표	○	○	○		
	5. 보수자황단장치 조건검사표	○	○	○		
03. 장치표	1. 상치신호기장치표	○	○	○		
04. 계열도	1. 신호현시계열도	○	○	○		
05. 공종별시험 점검표	1. 신호기장치 점검표	○	○	○		
	2. 선로전환기장치 점검표	○	○	○		
	3. 궤도회로장치 점검표	○	○	○		
	4. 폐색장치 점검표	○	○	○		
	5. 연동장치 점검표	○	○	○		
	6. 전원장치 점검표	○	○	○		
	7. ATS장치 점검표	○	○	○		
	8. ATC장치 점검표	○	○	○		
	9. ATP장치 점검표	○	○	○		
	10. CBTC장치 점검표	○	○	○		
	11. CTC장치 점검표	○	○	○		
	12. 전선로 점검표	○	○	○		
	13. 건널목장치 점검표	○	○	○		
	14. 안전설비 점검표	○	○	○		
	15. 열차번호인식기 점검표	○	○	○		
	16. TLDS 점검표	○	○	○		
06. 측정부	1. 건축한계 측정부	○	○	○		
	2. 절연저항 측정부	○	○	○		
	3. 접지저항 측정부	○	○	○		
07. 사진첩	1. 공사사진첩	○	○	○		
08. 명세표	1. 개소별 명세표	○	○	○		
09. 단자배치도	1. 기구함 단자배치도	○	○	○		
	2. 접속함 단자배치도	○	○	○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형태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최종	
	3. 분선반 단자배치도	○	○	○		
10. 매뉴얼	1. 유지보수 및 운용자 매뉴얼	○	○	○		
11. 사양서	1. 자재(제작)사양서	○	○	○		
12. 시험성적서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13. 안전성검증	1. 최초도입 주요자재 RAMS 자료	○	○		○	
14. 시설관리전산입력자료	1. ERP시스템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 자료	○	○	○		
15. ATP 자료	1. ATP Plan	○	○	○		
	2. APRINT(Telegram Report)	○	○	○		
	3. 텔레그램(발리스, LEU)	○	○	○		
	4. 발리스 ID List	○	○	○		
	5. 텔레그램 Spec	○	○	○		
	6. CRC(MD4) List	○	○	○		
	7. Leu Config	○	○	○		

9. 정보보안설비분야(8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 계정 관리	1. 시스템 계정 관리 대장	○	○	○	-	Unix 서버, Windows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제어 시스템, PC, DBMS, Web 등 해당설비
	2. 필수 계정 이외의 계정 삭제 점검 결과	○	○	○	-	
	3. Default 계정 변경 점검 결과	○	○	○	-	
	4. 비밀번호 정책 반영 점검 결과	○	○	○	-	
2. 서비스 관리	1.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 문서화 - 필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목록 포함	○	○	○	-	
	2. 불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거 점검 결과	○	○	○	-	
	3.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점검 결과 - 평문 통신(ftp, telnet 등) 사용 금지 - 암호 통신(SSH, sftp 등) 사용	○	○	○	-	
3. 운영 및 설정 관리 DB 관리	1. 최적의 보안설정 조치 내역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에서 이미에서 제시하는 보안설정 적용 결과	○	○	○	-	
	2. 문제 발생 대비법 및 이상화 환경 대응 내역	○	○	○	-	
	3. 긴급대응절차 및 복구 절차 문서 - 시스템별 표준업무처리 절차서(SOP) - 시스템 정보, 기동 및 종료 방법, 장애처리절차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	○	○	-	
	4. 제어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없음 확인서	○	○	○	-	
	5. DB 보안대책 수립 및 관련 문서	○	○	○	-	
	6. DB 보안대책 적용내역	○	○	○	-	
4. 웹 관리	1. 웹 서버 보안대책 수립 및 문서	○	○	○	-	
	2. 안전한 웹 서버 개발 및 구축 - 도의 해킹 등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내역	○	○	○	-	
5. 감사	1. 감사 로그를 남기도록 설정 내역	○	○	○	-	
	2. 감사 로그 보호를 위한 절차 내역	○	○	○	-	
	3. 감사 로그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	○	○	-	
6. 유지보수	1.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위험요소 내역	○	○	○	-	
	2. 장비 유지보수 인력 선정 투입 계획, 역할과 책임	○	○	○	-	
	3. 개발표준 및 방법 수립, 변경관리 산출물	○	○	○	-	
	4. 산출물 변경이력 관리 내역	○	○	○	-	
	5. 유지보수 결과 시험계획	○	○	○	-	
	6. 백업 기준 및 절차	○	○	○	-	
7. 보안성 검토	1. 보안성 검토 결과 및 조치 현황	○	○	○	-	
8. 장비 관리	1. 도입한 장비에 대한 현황자료 - 장비 목록, 수량, 가격, 라이선스 등	○	○	○	-	

* '정비보안설비'는 필요시 해당분야에서 인계인수 시행

10. 전기소방설비 분야(7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시기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준공	
1. 준공도서	1. 준공도서(도면,수량조서,제작승인도,준공서류)	○	○	-	○	
2. 사진첩	1. 공사사진첩	○	-	-	○	
3. 명세표	1. 개소별 명세표	○	○	○	-	
4. 측정부	1. 각종 측정 기록부	○	○	○	-	
5. 성적서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	○	○	-	
6. 매뉴얼	1. 유지보수 및 운전자 매뉴얼	○	○	○	-	
7. 인허가 서류	1. 각종 인허가 서류	○	○	-	○	

11. 관제설비(CTC)분야 (6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형태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최종	
1. 신설노선	1. 시스템 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파일	○	○	○		-DAT (자기 테이프) 저장 -철공사 월1회/연1회 백업 시행
	2. FIELD I/O List 또는 Element List	○	○	○		
	3. L/S화면 및 대형표시반 화면	○	○	○		
	4. 폐색 주파수카드 배열도(실장도)	○	○	○		종합시험 운행결과
	5. 표시 및 제어시험, 자동진로 시험결과 등	○	○	○		
2. 기존 운행선	1. 시스템 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파일(수정 전·후)	○	○	○		-D-DAT (자기 테이프) 저장 -철공사 월1회/연1회 백업 시행
	2. FIELD I/O List 또는 Element List (수정 전·후)	○	○	○		
	3. L/S화면 및 대형표시반 화면 (수정 전·후)	○	○	○		
	4. 폐색 주파수카드 배열도(실장도)	○	○	○		종합시험 운행결과
	5. 표시 및 제어시험, 자동진로 시험결과 등	○	○	○		
3. 결선도	1. LDTS와 연동장치간 결선도	○	○	○		전기연동 장치에 한함
4. 준공도면	1. 장비배치도	○	○	○		
	2. 케이블포설도	○	○	○		
	3. 제작도면	○	○	○		
5. 사양서	1. 자재(제작) 사양서	○	○	○		
6. 시험성적서	1.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	○	○		

12. 차량기지분야 (9항목)

대분류	소분류	인계인수형태		인계인수형태		비고
		파일	문서	개통	최종	
1. 토목	1. 노반분야 참조					
2. 궤도	2. 궤도분야 참조					
3. 건축(기계설비)	3. 건축분야 참조					
4. 송변전	4. 송변전분야 참조					
5. 전차선로	5. 전차선로분야 참조					
6. 전력설비	6. 전력설비분야 참조					
7. 통신설비	7. 통신설비분야 참조					
8. 신호설비	8. 신호설비분야 참조					
9. 검수설비(기계설비)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면 포함)	○	○	○		
	2. 기계설비 시설물 목록	○	○	○		
	3. 기계설비준공도	○	○		○	
	4. 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	○		○	
	5. 계산서(용량, 부하산출서 등)	○	○		○	
	6. 각종 예비품 목록	○	○	○		
	7. 운전 및 유지관리매뉴얼	○	○	○		
	8. 제작사진첩	○			○	
	9. 하자보증서	○	○		○	
	10. 전산입력자료	○			○	
	11. 운용자 및 유지보수 교육현황	○	○	○		
	12. 기계설비 인허가 사항	○	○		○	
	13. 기지 시행계획보고서	○	○	○		

[별표 3] 개통관련 세부흐름도(제46조 관련)

기 간	주요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기본설계	- 기본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기본설계 결과 보고	건설자	제5조 제11조
	실시설계	- 실시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실시설계 결과 보고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설자	제12조 제14조
	공사계약 및 착공	-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낙찰차액감액 협의 - 공사에 필요한 용지확보 - 착공계획 수립 보고	건설자	제16조
	착공설명회	- 설명회 개최	건설자	제18조
	사업공정통보	- 사업자에게 사업공정 통보 등	건설자	제20조
	공사 중간점검	- 분야별 공정마다 50% 도달시 시행	건설자	제21조의1
D-3년전	차량구매계획	- 차량구매계획 수립(신형차량은 4년전)	사업자	제21조
D-1년전(2월)	소요인력협의	- 조직 및 소요인력 보고	사업자	제22조
	열차 및 인력운영계획	- 열차운영계획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보고	사업자	제23조
	공사비집행계획	-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 보고	건설자	제23조
D-1년전(5월)	개통사업예산확보	- 개통사업 관련 소요인력 등 예산확보 계획수립	사업자	제24조
D-1년전(6월)	인력확보	- 소요인력 충원계획 수립	사업자	제22조
D-8개월전	종합공정보고	-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 작성 통보	건설자	제25조
	신설노선명 및 역명 제정방안 마련	- 철도노선 또는 역이 신설되는 경우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 방안 마련 제출	철도시설 관리자	제33조
D-7개월전	인수운영진담반	- 인수운영진담반 구성 운영	건설자	제25조의1
	자료송부	-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송부	건설자	제27조
D-6개월전부터	차량 인수	- 철도차량 인수 시작	사업자	제32조
D-6개월전	합동점검	-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	건설자	제26조
	시험선구간완공	- 차량인수 등을 위한 시험선구간 완공	건설자	제29조
D-5개월전까지	신설 노선명 및 역명 확정 통보	-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신설 노선명 및 역명 확정	국토부	제33조
D-3개월전	고시 요청	-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고시 요청	철도시설 관리자	제33조
	충원인력교육	- 충원인력 교육시행	사업자	제22조
	물품확보계획	- 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사업자	제34조
	개통계획	- 개통계획수립 보고(통보)	건설자	제36조
D-2개월전	준공확인	-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건설자	제45조
D-40일전	차량성능시험	- 차량성능시험 완료	사업자	제32조
D-30일전	차량인수완료	- 차량인수완료	사업자	제32조
	개통행사계획	-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보고	건설자	제37조
	인력투입	- 운영 및 유지보수인력 투입	사업자	제38조
D-20일전	영업개시안 보고	- 영업개시안 보고	사업자	제39조
	장비활용교육 등	- 장비, 공유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사업자	제38조
D-10일전	이용자점검	- 시설물 이용자 점검	사업자	제41조
D-day 전까지	철도시설 준공 및 인수인계	- 철도시설 준공 후 인수인계 및 보고	건설자	제42조
D+90일이내	운영결과보고	- 철도운영결과 개선사항 등 보고	사업자	제41조

(주) D(D-day, 개통 예정일), 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 사업자(철도사업자), 국토부(국토교통부)